#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95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구자근 · 김석기 · 조지연

인요한 • 유상범 • 박준태

이상휘 · 신성범 · 박성민

정동만 · 김도읍 · 강명구

강선영 • 한기호 • 최수진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 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 법률 제 호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다음 표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3천억원 초과	47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제55조(세율) ①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팀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3	도근			
에 <u>다음 표의</u> 세율을 적용さ	하여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띠	다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법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捐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 상			
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	특례			
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서	네 액			
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	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			
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u> </u>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	9			
2억원 초과 <u>1천800만원 + (2억</u>	원			
<u>을 초과하는 금액</u>   200억원 이하	의			
100분의 19)				
<u>200억원 초과</u>   <u>37억8천만원 + (200</u> 원을 초과하는 금액				
<u> 3천억원 이하</u> <u> 100분의 21)</u>				
625억8천만원 + (3	<u></u>   천			
3천억원 초과 억원을 초과하는 금				

의 100분의 24)

<신 설>

1.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 는 경우

<u>과세표준</u>	<u>세율</u>
<u> 2억원 이하</u>	과세표준의 100분의 9
<u>2억원 초과</u> <u>200억원 이하</u>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u>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4)

 2.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

 오

<u>과세표준</u>	<u>세율</u>
<u> 2억원 이하</u>	<u>과세표준의 100분의 4</u>
<u>2억원 초과</u> <u>200억원 이하</u>	800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3천억원 초과	475억8천만원 + (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19)